

[서식1]

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체크리스트

※ 본 체크리스트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여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실제 대출승인 여부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 ※ 모든 항목이 “예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,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
구분	주요내용	확인결과
지원대상	① 신청일 현재 대표(이사)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②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(붙임3, 참고1~3 참조) 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충족 - 상시근로자수 충족 - 영리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사업자(본점) *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**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,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대상채무	①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인 상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② 비은행권* 대출에 해당 *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(농협·축협·수협)의 단위조합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③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.0% 이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④ '22.5.31.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(신용·담보대출)에 해당 *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(이사)명의 가계대출 제외 **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 등), 결제성 대출(구매자금대출 등), 외화대출, 리스 등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제한대상	①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 *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, “예” 체크 **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, 징수특례의 경우, “예” 체크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②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정보” 또는 “공공정보”에 등록사실 없음 * 신용도 판단정보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 ** 공공정보: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·개인회생·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③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사실 없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④ 휴업 또는 폐업사실 없음(정상 영업 중인 상태에 해당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⑤ 「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」에 해당하지 않음(붙임4 참조) 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(도박·사치·향락, 건강유해, 부동산 투기 등) -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(법무·세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20 년 월 일

상호명(사업자등록번호):

성명(생년월일):

(인)

[서식3]

담보제공 신청서

본인은 하나은행과 체결한 20__년 __월 __일자 「대출거래약정」(이하 “대출약정”)에 따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)에 담보제공을 신청하며 채무자(본인)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공단의 예금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.

제1조(대출이자의 계산) ① 채무자(본인)가 하나은행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.

1. 월별 분할상환금
2. 대출이자: 대출잔액 × 대출이자율(연 __%) × 대출일수 /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

② 채무자(본인)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합니다.

제2조(대출 연체에 대한 특례)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(본인)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. 다만, 대출원금(분할상환금)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3조(신청서의 효력) ① 대출약정에 대하여는 하나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이 대출약정 및 하나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.

제4조(정보제공) 공단과 하나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

